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칙

1절 총칙

;전문

1 장 총 칙

2절 의결기구

2 장 학생총회

3 장 전체학생대표자회의

4 장 학생총투표

3절 자치기구

5 장 중앙운영위원회

6 장 총학생회장단

7 장 중앙집행국

8 장 단과대학 학생회

9 장 동아리 연합회 및 애기능 동아리 연합회

10 장 학부학생회와 과/반학생회

11 장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12 장 총학생회 특별기구

4절 재정

13 장 재정

5절 선거

14 장 선거

6절 부칙

15 장 회칙개정

16 장 부칙

*선거시행세칙

*재정운영세칙

총학생회칙

1절 총칙

;전문 전략

1 장 총 칙

1조 (명칭) 본회는 고려대학교 안암총학생회라 칭한다.

2조 (목적) 본회는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학생자치활동과 대사회적으로 진보적이며 사회 참여적인 활동을 통해 사회역사발전에 기여하며, 고려대학교 학우들의 권리와 이해를 옹호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한다.

3조 (위치) 본회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안암배움터에 위치한다.

4조 (회원)

1항 본회의 정회원은 안암배움터 재학생 전원으로 한다.

2항 본회의 준회원은 안암배움터 휴학생으로 5 조 2항, 4항 2호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다.

3항 회원의 권리와 임무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준회원으로 인준 받을 수 있다.

5조 (회원의 권리와 임무)

1항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2항 본회의 회원은 회칙에 근거한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3항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모든 활동에 대한 보고를 받을 권리가 있다.

4항

1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2 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5항 본회의 회원은 본회를 부인하거나 정당한 학생 자치활동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저항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6항 본회의 회원은 학문사상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7항 본회의 회원은 자유로운 정치활동의 권리를 갖는다.

6조 (본회의 구성) 본회는 민주적인 운영을 통한 학생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학생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중앙집행국, 각 단과대학학생회, 각 학부학생회 또는 과반학생회를 두고 필요에 따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산하에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7조 (학교운영참여)

본회는 대학의 자치와 자율적 운영을 위해 학교운영에 있어 적극 참여할 수 있다.

1항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중요사항

- 2항 학생권익과 밀접한 사항
- 3항 본교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의 수립 및 진행
- 4항 기타 본회의 목적과 관련된 사항

2절 의결기구

2 장 학생총회

8조 (지위) 학생총회(이하 총회)는 총학생회 최고의결기구의 지위를 갖는다.

9조 (구성) 총회는 정회원 전체로 구성된다. (단, 정회원 중 졸업예정자의 경우 참석자만 정족수에 포함한다)

10조 (의장) 총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하며, 총학생회장 사고 시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단, 의장 탄핵안건 시 본회의 중앙운영위원 중 전학대회에서 인준된 1인이 임시의장의 직을 수행한다.

11조 (운영)

- 1항 총회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재적 대의원 1/3 이상, 회원 60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소집요구가 있을 때 총학생회장이 소집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총학생회장이 이를 직접 소집한다.
- 2항 총회의 소집은 소집일로부터 일주일 전에 공고가 되어야 하며 안전과 안전에 대한 설명도 소집일로부터 5일전에 공개가 되어야 한다. 단, 전 항의 단서조항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3항 총회는 정회원 1/5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4항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비상학생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비상학생총회는 정회원 1/10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5항 총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안건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로 위임할 수 있다. 단, 탄핵안건의 경우는 제외한다.

12조 (업무 및 권한)

- 1항 총학생회장단의 탄핵안 심의 및 발의
- 2항 전학대회에서 상정한 안전 및 본회 회원이 발의한 안전의 심의 및 의결

3 장 전체학생대표자회의

13조 (지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는 총학생회의 학생총회 다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그 상설기관으로 중앙운영위원회를 둔다.

14조 (구성)

- 1항 전학대회는 정,부 총학생회장, 각 단과대학 정,(부)학생회장, 각 과반 정 학생회장까지의 직선대표로 구성된다.
- 2항 ; 1과 1단대인 경우와 학부제를 실시하고 있는 단과대에서는 해당 단과대 체계를 따라 직선인 단과대 운영위원들을 대의원으로 간주한다. 중복 선출 대표자의 경우 전학대회가 열리기 전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논의 한 후 전학대회에서

최종 인준한다.

- 3항 동아리연합회와 애기능 동아리 연합회는 분과장 이상의 직선대표, 특별기구는 회칙에 근거하여 대의원 자격을 부여한다.
- 4항 학생회장이 아직 선거를 치르지 않았거나 기타의 이유로 궐위시에는 사고로 하고, 해당 과학생회는 발언권을 가지는 대표를 파견할 수 있다.
- 5항 궐위 대의원은 재적 대의원에서 제한다.
- 6항 이상의 경우에 있어 부가적으로 혹은 예외적으로 인정되어 의결권한을 갖는 대의원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학대회에서 인준을 거쳐 결정한다.

15조 (의장) 전학대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한다. 단, 총학생회장 사고 시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수행한다.

16조 (업무 및 권한)

- 1항 회칙을 제정 또는 개정
- 2항 총학생회의 활동에 필요한 각종 세칙을 제정 또는 개정
- 3항 고려대학교 학칙의 개정 발의
- 4항 총학생회의 사업계획과 정책의 기본방향을 밝히며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5항 총학생회비의 인상, 인하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할 수 있다.
- 6항 총학생회비의 예산, 결산을 심의 승인한다.
- 7항 중앙집행국 각 국장의 인준권 및 해임의결권을 가진다.
- 8항 새로 구성된 중앙집행국의 기구나 집행부서에 대한 심사 및 인준권을 가진다.
- 9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학대회 하에 특별위원회 혹은 상임위원회 등을 구성할 수 있다.
- 10항 중앙운영위원회와 중앙집행국 회의의 부적당한 결정사항을 변경 할 수 있다.
- 11항 학생총회 소집발의와 총투표 실시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 12항 총학생회장단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학생회 회칙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전학대회 의원 1/2 이상의 연서로 탄핵을 발의할 수 있다. 단, 해임의결은 36조에 준한다.
- 13항 기타 안건으로 채택되는 사항에 대해 심의 및 결정을 한다.

17조 (운영)

- 1항 전학대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 1 정기회의는 매 학기 1회를 둔다.
 - 2 임시회의는 재적의원 1/5 이상의 요구나 회원 30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 3 정기회의는 중앙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의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도 긴급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 2항 전학대회 안건은 중앙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전학대회 의장에 의해 상정된다. 이 외의 안건상정은 중앙운영위원회 1/3, 대의원 1/5 이상의 연서로 할 수 있다.
- 3항 전학대회의 소집은 열흘 전에 공고되어야 하고 안건과 안건 설명에 대한 공고, 자료배포도 소집 일주일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단, 전 항의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4항 전학대회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한다.
- 5항 전학대회의 개최가 불가할 경우 의장의 재량에 따라 10일 이내에 재소집하고, 재소집이 불가할 경우 전학대회의 안건은 중앙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8조 (의결)

- 1항 전학대회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16조 1, 2, 3, 5항은 재적의원 2/3 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항 의결의 방식은 공개투표로 한다.

19조 (참관)

- 1항 본회의 회원은 전학대회의 참관권을 가진다.
- 2항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 3항 전학대회 대의원석과 방청석은 정확히 구분이 되도록 배치한다.

20조 (발언권) 본회의 회원은 전학대회에서 발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단, 전학대회 의장은 전학대회의 효과적 진행을 위하여 이들의 발언권을 제한할 수 있다)

4장 학생총투표

21조 (지위) 학생총투표(이하 총투표)는 전체학생총회를 대신할 수 있는 의사결정방식이다.

22조 (구성) 총투표는 정회원 전체로 구성된다. (단, 정회원 중 졸업예정자의 경우 참석자만 정족수에 포함한다)

23조 (운영)

- 1항 총투표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실시요구가 있을 때, 총학생회장이 주최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총학생회장이 이를 직접 주최한다.
- 2항 총투표의 실시는 열흘 전에 공고되어야 하고 투표 안건과 안건 설명에 대한 공고, 자료배포는 실시 일주일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단, 전항의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3항 총투표는 정회원 과반수 투표로 성립되며, 유효투표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단, 전체투표율이 50%가 안 될 때에는 무효로 판정한다.
- 4항 나머지 투표에 관련된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을 참고로 하여 일반적인 투표관리의 원칙에 맞게 집행한다.

24조 (투표관리위원회)

- 1항 총투표가 결정된 후 총학생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투표관리위원회는 전학대회대의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집행국내에서 호선한다.
- 2항 투표관리위원회는 총투표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25조 (온라인투표)

- 1항 투표관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온라인공간에서 총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 2항 온라인 투표는 선거시행세칙을 참고로 하여 일반적인 투표관리 원칙에 맞게 집행한다.
- 3항 온라인 총투표는 투표가 마감된 후 투표관리위원회에서 유효성을 인준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26조 (정책투표)

- 1항 본회는 일상적인 의사수립과 여론파악을 위해 정책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 2항 정책투표는 회원 180인 이상, 중앙운영위원 1/5이상이 요구가 있을 때 총학생회장이 주최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안의 경우 총학생회장이 직접 발의할 수 있다.
- 3항 정책투표는 중앙운영위의 동의를 얻어 총학생회에서 실시하며, 온라인투표로 대체할 수 있다.
- 4항 회원 1/10 이상의 참여로 성립하며,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5항 정책투표의 결정은 총학생회의 집행을 강제할 수 있다.

27조 (효력)

- 1항 한 투표함에서 3% 이상의 오차가 발생할 때에는 해당 투표함에 대해 무효처리 한다.
- 2항 전체적으로 3% 이상의 오차가 발생할 때에는 선거자체가 무효처리 된다.

3절 자치기구

5 장 중앙운영위원회

28조 (지위)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는 전학대회의 상설기관의 지위를 갖는다.

29조 (구성)

- 1항 중운위는 총학생회장단과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 및 애기능 동아리 연합회 회장으로 구성된다.
- 2항 총학생회장단 궐위 시 상임집행국장이 의결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
- 3항 필요에 따라 위의 규정된 사람 이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30조 (의장)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한다. 단, 총학생회장 사고 시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수행한다.

31조 (업무 및 권한)

- 1항 총학생회 예산, 결산을 심사하여 전학대회에 상정한다.
- 2항 중앙집행국 사업을 심의, 조정한다.
- 3항 전학대회의 소집을 결정한다.
- 4항 학생총회와 전학대회의 준비를 조직한다.
- 5항 총투표와 그 밖의 총학생회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전 회원적인 토론의 준비, 진행을 조직한다.
- 6항 총학생회장단 선거 일정을 결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7항 회칙 개정을 발의하여 전학대회에 상정할 수 있다.
- 8항 필요한 경우 중운위 산하 한시적으로 특별회의 또는 특별위원회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9항 중앙집행국의 결정에 대한 변경, 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
- 10항 상설적 의사결정기구로서 기타 사항에 대한 권한을 행사한다.

32조 (운영)

- 1항 중운위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 1 정기회의는 주 1회를 원칙으로 한다.
 - 2 임시회의는 의장이나 중운위원의 과반수 요구에 의해 열 수 있다.
 - 3 임시회의는 전학대회대의원 1/10이상이나 회원180인 이상의 요구에 의해 열 수 있다.
- 2항 중운위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한다.

33조 (의결) 중운위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장 총학생회장단

34조 (지위) 총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학생총회, 전학대회, 중앙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35조 (업무 및 권한)

- 1항 총학생회 활동에 있어서 회원들의 의사를 수렴하여 민주적으로 수행한다.
- 2항 본회의 대표로서 학생총회, 전학대회와 중앙운영위원회에 본회의 제반의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 3항 학생자치활동에 관계되는 제반 학교 행정의 문제에 대해 회원의 의사를 대변하며 학교 당국에 의사를 개진하고 필요할 경우 각종 회의에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다.
- 4항 학생총회, 전학대회, 중앙운영위원회, 집행국회의를 소집 및 주재한다.
- 5항 중앙집행국과 산하 기구장을 임명하고 해임할 권리가 있으며 이에 대해 전학대회의 인준을 구할 수 있다.
- 6항 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을 보좌하고 총학생회장의 전권을 받아 그의 일부 기능을 시행하며 총학생회장이 없거나 자기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를 대리한다.
- 7항 총학생회장단은 차기 학생회 건설에 힘쓴다.

36조 (탄핵)

- 1항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발의는 전학대회 대의원 1/2이상, 정회원 1/10 이상의 연서로 할 수 있다.
- 2항 중앙운영위원회는 탄핵발의 5일 이내에 전학대회를 소집하며 임시의장은 전학대회에서 중앙 운영위원 중 1인을 선출한다.
- 3항 탄핵안은 전학대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 또는 총투표 안건으로 상정한다.
- 4항 탄핵안은 총회나 총투표를 통해 정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5항 총회소집 또는 총투표의 실시여부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하며 총투표의 관리는 전체 학생대표자회의에서 선출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37조 (권한 대행)

- 1항 총학생회장단이 궐위시에는 중운위에서 선출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전학대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 2항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결정이 있을 때에는 본 조 1항에 준한다.
- 3항 권한대행의 임기는 (보궐)선거 당선자 공고일까지 한다.

7 장 중앙집행국

38조 (지위) 중앙집행국은 본회의 최고집행기구이다.

39조 (구성)

- 1항 중앙집행국은 총학생회장단, 각 집행국원으로 한다.
- 2항 중앙집행국은 집행의 원활함을 위해 산하에 집행부서, 부원을 둘 수 있다.
- 3항 중앙집행국(장)은 총학생회장단이 구성하여 전학대회에서 인준한다.
- 4항 중앙집행국은 공개적으로 공고를 내어, 모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중앙운영위에서 동의를 받아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40조 (업무 및 권한)

- 1항 총회, 전학대회, 중운위에서 결정된 업무를 집행한다.
- 2항 총회, 전학대회, 중운위에서 본회의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한다.
- 3항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보고를 전학대회에 제출한다.
- 4항 본회의 사업 집행 전반을 담당한다.
- 5항 본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단과대, 과까지의 각 집행국 별 계열회의를 둘 수 있다.

41조 (운영) 중앙집행국 제반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총학생회장단 및 집행국장의 요구로 회의를 소집한다.

8 장 단과대학 학생회

42조 (지위) 단과대학 학생회는 각 단과대학의 자치기구이다.

43조 (구성) 단과대학 학생회는 각 단과대학 소속 회원 전체로 구성된다.

44조 (운영)

- 1항 각 단과대학 학생회의 최고기관은 각 단과대학 학생총회와 단대학생대표자회의이다.
- 2항 단대 학생대표자회의는 총학생회 회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대 학생회칙을 제정, 개정할 수 있다.
- 3항 단대학생회 운영위원회는 단대학생대표자회의의 규정을 받는 그의 상설기관이며, 단대학생회의 최고지도기관이다.
- 4항 각 단대 학생회장은 각 단과대학 학생회칙에 의거하여 선출한다.
- 5항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은 각 단과대학을 대표하여 중운위 위원, 전학대회의 의원이 된다.
- 6항 각 단과대학 학생회의 최고집행기관은 각 단과대학 학생회의 집행위원이며 단과대학 학생회 집행국은 단대학생대표자회의와 단과대학 운영위원회 앞에서 책임을 지며 사업보고를 한다.
- 7항 단과대학 학생회의 모든 기관과 기구는 단과대학 학생회 회칙에 따라 그 권한과 활동을 행한다.

9 장 동아리 연합회 및 애기능 동아리 연합회

45조 (지위) 동아리 연합회는 단위 회칙에 준해서 인정된 동아리들의 대표적인 자치기구이다.

46조 (구성) 동아리 연합회는 연합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동아리로 구성된다.

47조 (운영)

- 1항 동아리 연합회와 애기능 동아리 연합회의 최고기관은 동아리 총회이다.
- 2항 동아리 연합회와 애기능 동아리 연합회 대표자 회의는 총학생회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합회칙을 제정, 개정할 수 있다.
- 3항 동아리 연합회와 애기능 동아리 연합회 운영위원회는 대표자회의의 규정을 받는 상설 기관이며, 동아리 연합회와 애기능 동아리 연합회의 대표기관이다.
- 4항 동아리 연합회와 애기능 동아리 연합회장은 당 회의 회칙에 의거하여 선출한다.
- 5항 동아리 연합회와 애기능 동아리 연합회는 동아리를 대표하여 중운위 위원, 전학대회 위원으로서 자격이 주어진다.
- 6항 동아리 연합회와 애기능 동아리 연합회의 최고집행기관은 연합회의 집행위원이며 연합회 집행국은 동아리 대표자 회의에서 책임을 지며 사업을 보고 한다.
- 7항 동아리 연합회와 애기능 동아리 연합회의 모든 기관과 기구는 연합회의 회칙에 따라 그 권한과 활동을 행한다.

10장 학부학생회와 과반학생회

48조 (지위) 학부학생회와 과반학생회는 각 학부와 과반의 자치기구이다.

49조 (구성) 학부학생회와 과반학생회는 각 학부와 과반 소속 회원 전체로 구성된다.

50조 (운영)

- 1항 각 학부학생회와 과반학생회의 최고기관은 각 학부와 과반 학생총회이다.
- 2항 각 학부학생회와 과반학생회는 학생총회 산하에 상설적인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 3항 각 학부학생회와 과반학생회는 총학생회 회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부와 과반 학생회칙을 제정, 개정할 수 있다.
- 4항 각 학부 및 과반 학생회장은 각 학부와 과반 학생회칙에 의거하여 선출한다.
- 5항 각 학부 및 과반 학생회장은 각 학부와 과반을 대표하여 단운위 위원, 전학대회의 의원이 된다.
- 6항 학부학생회와 과반학생회의 모든 기관과 기구는 각 학부학생회와 과반학생회 회칙에 따라 그 권한과 활동을 행한다.

51조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학부학생회와 과반학생회 회칙에 따른다.

11장 단과대학생회장 연석회의

52조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 1항 총학생회 선거가 무산되는 경우와 총학생회 탄핵안건이 가결되어 잔여임기가 6개월이 넘지 않을 경우 안암 캠퍼스의 단과대학생회장들과 동아리 연합회와 애기능 동아리연합회장은 단과대학생회장 연석회의를 구성한다.

- 2항 단과대 학생회장 연석회의는 본칙 5장 운영위원회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 3항 단과대 학생회장 연석회의 내에서 의장을 호선한다
- 4항 차기 선거의 구체적인 일정은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에서 정한다.
- 5항 단과대학생회장 연석회의는 차기 선거의 선관위를 구성할 책임이 있으며 차기 학생회의 안정적 선출을 최우선 과제로 한다.
- 6항 단과대학생회장 연석회의 의장과 임시집행부는 전학대회에서 인준한다.

53조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의 의장)

- 1항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의 의장은 6장 총학생회장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 2항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의 의장은 임시중앙집행국을 구성하며 임시 중앙 집행국은 7장 집행국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12장 총학생회 특별기구

54조 (지위)

특별기구는 총학생회로부터 독립적 위상을 보장받으며, 특수한 독자 영역과 기능을 담당하는 상설 기구이다.

55조 (성립)

특별기구는 설치의 상설적 필요성 등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에 관하여 심사받는 인준 절차 등을 거쳐서 성립한다. 다음 각 항을 충족하는 경우

- 1항 본회 회원 중 전문적 영역을 가지고 자치활동을 꾸준히 수행하여 그들의 정체성이 확보되어 있을 때
- 2항 본회 내에서 관련분야 활동이 없거나 존재하고 있는 자치활동이 있더라도 총학생회 차원의 대외적인 대표성과 포괄적인 사업이 필요할 때
- 3항 관련분야 자치단체들의 연합체 또는 대표체인 경우

56조 (성립 절차)

본회 산하의 특별기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 1항 회원명부, 소개서, 활동보고서, 사업계획서, 서약서(본회칙 준수에 대한 서약), 중운위의 심의서, 내부회칙, 예산안, 추천명부(회원 300인 이상)를 전학대회에 제출한다.
- 2항 전학대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인정된다.

57조 (특별기구의 의무 및 권한)

- 1항 모든 특별기구는 예결산과 활동내역에 대해 전학대회에 보고를 하고 예/결산 심의를 받아야 한다.
- 2항 모든 특별기구는 총학생회와 사업을 협의 수 있으며, 중운위에 참여해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또한 총학생회는 상시적으로 특별기구와 협의를 해야한다.
- 3항 모든 특별기구는 다음의 양식을 제출하여 매년 상반기 중운위에서 재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1 전년도 결산안, 당해연도 예산안
 - 2 전년도 활동보고서
 - 3 회원명부

58조 (특별기구장)

- 1항 특별기구장은 원칙적으로 각 특별기구의 회칙에 의하여 선출하며 전학대회 대의원활동을 원할시에는 선출된 대표에 대해 중운위 심의를 거쳐 매학기 전학대회에서 인준한다. (단, 자세한 심의기준은 중운위에서 결정한다.)
- 2항 전학대회에서 인준된 특별기구장은 전학대회 대의원과 동일한 자격을 지닌다.
- 3항 특별기구의 내부 회칙 상 특별기구장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특별기구에서 선임한 1인이 특별기구장과 동일한 자격을 가진다.

59조 (재정)

- 1항 특별기구는 본 회비에서 그 기구가 독자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재정의 배분을 받는다.
- 2항 특별기구는 각 기구의 재정 배분에 관한 결정이 이뤄지는 본 회칙 내의 각종 결정 절차에서 사전에 통지받고 참여할 권리가 있다. 이에 관한 사항은 특별기구 재정배분에 관한시행세칙으로 규율할 수 있다.

60조 (징계)

- 1항 다음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중운위는 전학대회를 통해 해당 특별기구에 경고를 내릴 수 있으며, 예산의 10%내에서 삭감을 결정할 수 있다.
 - 1 정당한 사유와 사전 연락없이 예결산안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 2 회원의 부재가 계속되어 기구의 활동을 더 이상 유지해나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3 본래의 특별기구 성격과 활동이 심각히 변질되었을 경우
- 2항 다음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중운위는 전학대회에 해당 특별기구에 대한 제명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 1 경고가 2회 연속 누적되었을 경우
 - 2 다른 기구에 편입되거나 자체적으로 해산을 공표할 경우

4절 재정

13장 재정

61조 (재원) 본회의 재정은 학생회비와 학교보조금, 사업별 회비,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62조 (회비)

- 1항 회비는 매 학기 등록과 함께 납부하며 회비는 중운위의 심의를 거쳐 전학대회에서 조정, 결정할 수 있다.
- 2항 교지대는 회비와 별도로 분리·고지한다.
- 3항 교지 편집위원회는 전학대회 활동보고와 함께 예결산 보고를 하고, 예결산 심의를 받아야 한다.
- 4항 교지대 인상률은 교지편집위원회 (2004년 현재 「고대문화」 편집위원회, 「석순」 편집위원회)와 총학생회 사무국(연석회의)의 협의 후 전학대회에서 논의·인준한다.

63조 (회계 연도)

- 1항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해 12월부터 다음해 11월 30일까지로 한다.
- 2항 본회의 재정은 매년 1학기과 2학기로 나누어 집행한다.

64조(예산)

- 1항 예산은 매 학기 사무국(계열회의)에서 편성하여 중운위에서 심의, 조정하고 전학대회에서 결정한다.
- 2항 전학대회에서 확정된 예산안은 공개되어야 한다.

65조 (결산) 사무국에서는 예/결산안을 사무국 연석회의에서 작성한 다음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학대회에 제출, 보고한다.

66조 (거부권)

- 1항 전학대회에서 예/결산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예/결산 지급을 보류하고 재심의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 2항 재심의 요구가 있을 경우 중운위는 예결산안을 재검토하여 10일 이내에 수정안을 전학대회에 제출한다.
- 3항 전학대회에서 이를 15일 이내에 심의하여 즉시 공고한다.

67조 (세칙) 기타 재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례 및 재정시행세칙을 전학대회에서 의결하여 정한다.

5절 선거

14 장 선거

68조 (선거원칙) 본회의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 선거를 원칙으로 한다.

69조 (시기) 총학생회장단 선거는 매년 11월에 실시함을 그 원칙으로 한다. 시기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70조 (입후보자)

- 1항 총학생회장단 입후보 자격은 본회 회원으로서 5학기 이상 등록자로 한다.
- 2항 이외의 전학대회 의원은 해당 단위 회칙과 세칙에 따른다.

71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1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2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하고 민주적인 관리를 그 목적으로 한다.
- 3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련된 모든 제반사항을 심의하며 필요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4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시기 중앙운영위원회의 역할을 한다.

72조 (보궐선거)

- 1항 총학생회장단이 탄핵을 받거나 사퇴하였을 때 잔여임기가 6개월이 넘을 경우 결위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학대회는 실시일정을 결정해야 하며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
- 2항 기타 전학대회 의원의 결위시 해당단위의 회칙에 근거하여 처리한다.

73조(선거규칙)

기타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학대회에서 정한 선거규칙에 의거한다.

6절 부칙

15 장 회칙개정

74조 (발의) 본회 회칙개정 발의는 다음에 의한다.

- 1항 본회 회원 60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2항 중운위원 1/2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3항 전학대회 회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75조 (결정) 회칙개정 발의 시 전학대회 의장은 이를 즉시 공고하고 전학대회를 소집하여 심의, 의결한다.

16 장 부칙

76조 (효력발생) 본회 회칙은 개정된 날부터 일 주일의 경과조치 기간을 두고 효력을 발휘한다.(단, 경과조치 기간 중 회칙 수정의 요구가 있을 때는 즉시 중운위의 논의를 거쳐 전학대회를 소집하여 수정인준 절차를 밟도록 한다)

77조 (유권해석)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르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학대회에서 판결한다.

선거시행세칙

1 장 총칙

1조 (선거의 원칙)

- 1항 선거는 전대 학생회 사업을 발전적으로 평가, 계승하여 학우들을 학생회의 주인으로 세우는 과정으로 치뤄져야 한다.
- 2항 모든 학생회의 회원은 선거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치루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3항 학생회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 선거를 원칙으로 진행한다.

2조 (선거규칙의 목적) 고려대학교 안암총학생회 선거규칙(이하 규칙)은 총학생회 선거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조 (적용범위)

- 1항 본 규칙은 고려대학교 안암총학생회 정, 부학생회장 선거(이하 총학선거)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2항 단과대학 학생회장, 과학생회장 등의 선거는 해당 단과대학과 학과 학생회의 선거규칙에 준하여 시행됨을 원칙으로 한다.(단, 규칙이 없을 경우 본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 3항 본 규칙에 없는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 및 각 선본대표의 합의에 의해,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시행한다.

2 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4조 (선거권) 선거권은 고려대학교 안암 총학생회 정회원 모두에게 있음을 원칙으로 하며, 총학생회 투표일 전날까지 각 단대 학사지원부에 등록 확인된 재학생으로 한다. (단, 정회원 중 졸업예정자의 경우 참석자만 정족수에 포함한다)

5조 (피선거권) 총학생회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규정으로 주어진다.

- 1항 고려대학교 안암총학생회 회칙전문에 위배되는 목적을 갖지 아니한 자
- 2항 본회의 회원 60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 3항 추천은 복수추천이 가능하다.
- 4항 5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입후보 현재 재학 중인 자에 한한다.

6조 (후보자 등록) 총학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등록마감 시간 전까지 중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 1항 총학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중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 1 입후보자 등록원서(중선관위 소정양식)

- 2 600인 이상의 추천서
- 3 재학증명서
- 4 포스터용 사진 (CD로 제출)
- 5 출마소견문 (A4 1매) (CD로 제출)
- 6 핵심선거공약, 으뜸구호 (CD로 제출)
- 7 이력서 (CD로 제출)
- 8 선거운동본부장의 재학 또는 휴학증명서
- 9 선거공영제의 실행을 위해 중선관위가 지정한 공동선거자금 : 30만원 이하(선관위의 재량에 따라 이 범위 내에서 지정)

7조 (입후보자 심사)

- 1항 중선관위는 등록시간 마감 후 2시간 이내에 5조에 의거 입후보자의 자격심사를 해야 한다.
- 2항 입후보자가 6조의 구비서류를 등록마감 시간 이전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등록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의사가 있더라도 등록을 허가하지 않는다.
- 3항 입후보자 제출서류에 결함이 있을 시 주의 1회를 준다.

8조 (입후보자 최종등록) 중선관위는 등록마감 후 2시간 이내에 입후보자 최종등록을 위한 모임을 소집하여야 하며 역할은 다음 각 호의 규정으로 한다.(단, 참여자는 입후보자와 선본장 전원으로 하며, 불참 시 중선관위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 1 등록구비서류 확인 및 최종등록 결정
- 2 선거규칙 검토 : 규칙 검토와 함께 각 선본 대표와 중선관위장이 규칙에 나오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합의를 할 수 있다.
- 3 기타 선거에 필요한 제반의 사항

3 장 선거

9조 (선거일)

- 1항 총학생회 선거는 매 학년도 11월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2항 선거일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3항 이외의 구체적인 선거일정은 중선관위에서 정한다.
- 4항 2항의 일정은 중선관위에서 후보등록 마감 1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0조 (선거운동)

- 1항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후보의 당선을 위한 제반의 행위로 규정한다.(단,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 1 선거에 관한 일반적인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2 학생들로 구성된 자치단체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2항 추천기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1 후보자 추천, 설문조사, 후보자 추대모임 등은 사전 선거운동으로 규제하지 않는다.

- 2 추천서는 중선관위에서 추천 하루 전에 배포한 추천서를 사용한다.
- 3 이름(혹은 선본)을 거명한 후보추대모임은 1회에 한해 실시하며 실내에서, 그리고 후보자추대모임을 알리는 선전물은 대자보로 한한다.
- 4 강의실에서 유세를 통한 추천행위는 규제한다.

11조 (선거운동기간)

- 1항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등록이 이루어진 다음날 아침 6시부터(선관위에서 정한 시한부터) 투표 전날 자정까지로 한다.
- 2항 선거운동 기간 이전의 사전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중선관위의 판단에 따라 징계조치 할 수 있다.
- 3항 사전 선거운동은 추천기간 이전 선거에 관계된 물품판매, 유인물의 배포를 말한다.

12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 1항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1 중선관위의 위원과 단대 선관위원
 - 2 신, 구임 단대학생회장
 - 3 신입 과학생회장(단, 과학생회 선거를 치르지 않은 과는 총학생회 선거운동기간 현재 학생회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4 총학생회 중앙집행국(단, 이는 등록마감일 7일전까지 사임한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5 본교의 재학생이나 휴학생이 아닌 자
- 2항 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선본에게 경고 1회를 준다.

2 절 선거운동

13조 (총칙)

- 1항 유세는 개인유세와 합동유세로 나누며 그 시기는 선거운동 기간에 준한다.
- 2항 선전물은 현수막, 공동정책 자료집, 신문 및 리플렛, 대자보등을 말하며, 세척과 선관위가 지정한 형식을 따른다.
- 3항 학내언론은 공영제로 한다.
- 4항 소견문, 포스터는 중선관위 공영제로 한다.

14조 (선전물)

- 1항 모든 부착물과 현수막은 중선관위가 지정하는 장소에 한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해당후보에게 주의 1회를 준다. 중선관위는 다양한 선본의 선전물 부착을 최대한 보장할 의무가 있다.
- 2항 선거운동기간에 배포되는 선본 유인물은 종류를 불문하고 중선관위의 사전허가를 거친 후 후보의 이름을 밝히고 배포한다.(단, 타 후보에 대한 비방 등 민주적인 선거분위기를 해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중선관위의 결정으로 배포금지를 명할 수 있다) 허가 시간은 중선관위에서 지정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해당 후보에게 경고 1회를 준다.
- 3항(공동정책자료집)
 - 1 공동정책자료집은 각 선본 당 b5사이즈 40p 내로 제작하며 부수는 3000부 이내에서 선본과의 협의 후 결정한다.
 - 2 각 선본은 선관위가 지정한 시간까지 편집을 완료하여 편집파일과 완성된 서면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징계를 받는다.

- 3 위의 기한을 6시간이상 넘길 시 해당 선본의 자료는 공동정책 자료집에 수록할 수 없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동정책자료집이 선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배포해야 한다.
5. 공동정책자료집의 비용은 선거공영제의 취지하에 중앙선관위 예산에서 우선배정하고 부족 금액을 선본의 합의 하에 결정한다.

4항 현수막

- 1 선관위는 학생회관, 중앙도서관, 과학도서관 3곳에 선본별 현수막을 제작하여 부착한다.
- 2 한 선본(후보)당 현수막은 6개 이하로 한다. 이는 선관위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3 선관위가 지정하는 장소에 부착하는 현수막의 규격은 가로 또는 세로로 1폭(110 cm)×10마(1마=91.44cm)이하로 한다.

5항 신문 및 리플렛

- 1 각 선본은 4회 이내에서 신문 및 리플렛을 발행할 수 있다.
- 2 신문의 색도는 1도, 규격은 2절 대판 4면으로 한정한다.
- 3 리플렛의 색도는 2도, 규격은 펼친 면이 A3사이즈 이하로 한다.
- 4 매체는 회당 8000부 이내로 한정한다.

6항 대자보

대자보선전물은 선관위가 지정한 게시관에 지정한 형식으로 부착해야한다.

- 7항 각 선본은 마지막으로 내는 유인물, 신문 등에 선거운동자금 결산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후보에 대한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15조 (개인유세)

- 1항 개인유세는 각 선본의 정부학생회장 후보 또는 선거운동원들이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벌이는 강의실유세, 선거물품배포 등의 모든 종류의 선전활동을 말한다.
- 2항 선관위는 자유롭고 활성화된 선거문화를 만들기 위해 각 선본들의 개인유세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3항 개인유세는 선거운동기간동안 각 선본별로 수시로 열 수 있다. 다만, 지나친 소음이나 학우들의 불편함을 초래하는 경우, 선관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 4항 등교시간과 점심시간의 교문 주위 등의 학우들이 많이 이동하는 시간과 장소에는 한 선본이 공간을 독점할 수 없다. 필요한 경우 선관위는 이를 규제할 수 있다.
- 5항 개인유세와 관련된 기타 세부적인 사항들은 중선관위의 결정에 따른다.

16조 (합동유세)

- 1항 합동유세는 중선관위의 관리 하에 2회 이하 실시할 수 있다.
- 2항 합동유세의 순서는 합동유세 1시간 전에 추첨하여 정한다.
- 3항 유세시작 5분 전까지 후보자가 도착하지 않았을 시 유세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 4항 각 선본 당 유세시간은 선관위가 결정한다. 제한시간이 넘을 경우 중선관위는 마이크 등 유세시설을 철거한다.(단, 유세자가 교체하는 시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 5항 후보자는 유세가 끝날 때까지 퇴장할 수 없다.(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중선관위장의 동의하에 10분 이내로 자리를 비울 수 있다)
- 6항 3항에서 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해당 후보자에게 징계를 준다.
- 7항 타 후보자가 유세시 유세를 방해하거나 자기 선본의 유인물, 선전물을 배포할 수 없다.
- 8항 이 외의 합동유세의 진행은 중선관위장이 책임을 진다.

17조 (합동공청회)

- 1항 합동공청회는 중선관위의 책임 하에 학내언론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 2항 후보자는 합동공청회의 자리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10분 전까지 입장하여야 한다.(단, 이를 어길 시 징계가 주어진다)
- 3항 합동공청회는 후보자의 소견발표, 학내 언론사의 질의와 응답, 참석자의 서면질의로 구성된다.
- 4항 합동공청회의 공정한 진행을 위하여 중선관위는 질의를 통제할 수 있다.
- 5항 이외의 합동공청회의 진행은 중선관위장이 책임진다.
- 6항 합동공청회의 내용은 중선관위와 각 언론사와의 협의를 거쳐 적당한 매체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18조 (인터넷 공간에서의 선거운동)

- 1항 각 선분은 인터넷 공간에서 홈페이지, 카페, 커뮤니티 등의 인터넷 선거운동 공간을 1개 구성할 수 있다.
- 2항 각 선분은 중선관위에서 마련한 메일링리스트를 각 선분의 웹자보를 2번 공동발송 할 수 있다.
- 3항 각 선분은 자신의 선분의 인터넷 선거운동 공간을 제외한 공간에서 논쟁과 답변을 할 수 없고 위반 시 주의 1회를 준다.
- 4항 이외의 규정은 중선관위의 결정에 따른다.

4 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조 (위상) 총학생회 선거에 관한 제반의 업무를 선거시행세칙에 의하여 진행, 조절, 통제할 권한을 중앙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기구이다.

20조 (목적) 총학생회 선거를 공정하고 민주적, 대중적으로 치루어내는 데 있다.

21조 (업무 및 권한)

- 1항 총학생회 선거에서 공정성, 민주성, 대중성을 구현할 제반 사업을 기획, 집행한다.
- 2항 학내 각 언론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이루어 선거에 대한 기본 선전과 교양을 수행한다.
- 3항 총학생회 선거를 올바른 정책대결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제반 활동을 전개한다.
- 4항 선거시행세칙과 중앙선관위와 각 선분이 합의한 선거방식에 대한 집행을 감시하고 이를 시행치 않을 시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등을 포함한 선분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공정선거를 해치는 제반 선거운동사례를 적발하여 타당한 징계를 가할 수 있다.
- 5항 중선관위는 대중적인 선거를 위한 그 의의와 내역을 공개한 후 공동선거자금을 지정할 수 있으며 공동선거자금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진다.
- 6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피선거권이 없다.

22조 (구성)

- 1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 시작 10일 전에 구성을 발의한다.
- 2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을 15인 이내로 한다. 선관위원장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중운위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 선출한다. 나머지 14인 중 4인은 중운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이 외의 선관위원의 자격은 현재 재학 중인 자, 1단체 1

인으로 제한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인정받는다.

23조 (소집, 개회 및 의결)

- 1항 중선거위의 제반 일상업무 처리와 후보자의 이의제기 등이 있을 시 중선거위장과 중선거위원 1/3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 2항 중선거위원 과반수 출석을 확인한 후 즉시 개회한다.
- 3항 중선거위의 결정은 재적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에 의해 결정한다.
- 4항 '선거공영제'의 실행을 위해 중선거위장은 필요한 부분에서 선본들의 집행국장 모임을 소집할 수 있다.

24조 (단대 선거관리위원회)

- 1항 단대 선거관리위원회는 단대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선관위원장과 단대 선거시행세칙에 의거한 선관위원으로 구성한다.
- 2항 단대 선관위원은 피선거권을 갖지 아니하며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단, 사임한 이후에는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25조 (해임)

- 1항 선관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가 아니면 해임 또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 1 선관위원의 부정행위가 발각되었을 때.
 - 2 본 회의 회원 자격이 없음이 발견되었을 때.
 - 3 선관위원으로서의 품위와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을 때.
- 2항 선관위원 해임에 대한 발의는 각 선본과 선관위원이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선관위원의 해임은 해당 선관위원을 제외한 선관위원 2/3이상과 위원장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6조 (자원봉사자)

- 1항 각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는 선관위와의 원활한 소통과 연락 및 잡무 처리를 위하여 선관위가 요청할 경우 자원봉사자를 파견해야 한다.
- 2항 유세준비, 투, 개표 준비 등의 실무 처리를 위하여 임시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이때 각 선본에게 일정수의 자원봉사자를 요청할 수 있다.

5 장 참관인

1 절 투표참관인

27조 (통칙)

- 1항 투표참관인은 각 후보를 대신하여 해당 투표소에 배치되어 투표진행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 2항 각 후보자는 각 단대 투표소 당 참관인 1인을 배치할 수 있다.

28조 (자격)

- 1항 참관인은 원칙적으로 해당 단대 학생으로 한다.(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타 후보의 동의를 얻어 타 단대 재학생을 임명할 수 있다)
- 2항 각 후보자는 투표 1일전 18시까지 참관인 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단, 투표 2일째 참관인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투표 첫날 18시까지 교체할 참관인 명단을 중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 3항 2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참관인을 배치할 수 없다.

29조 (이의제기)

- 1항 참관인은 각 후보를 대신하여 투개표 상황을 참관, 감독하여 투개표 상황에 대하여 중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2항 투표소 내에서 행한 참관인의 결정에 대해서 후보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3항 해당 단대 투표소에서 참관인이 불참할 경우 해당 단대 선관위와 타 후보 참관인에 의해 결정된 상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0조 (전제조건)

- 1항 참관인은 투표소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2항 참관인이 투표소에서 부정행위를 할 경우 중선관위와 타 후보측 참관인이 만장일치로 인정했을 때 단대 중선관위장은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투표종료까지 해당 투표소에서 참관자격을 상실한다.
- 3항 참관인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했을 때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 1 투표를 방해했을 경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 2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특정 후보를 지칭하는 물품을 소지하거나 언동을 할 경우
 - 3 기타 단대 선관위에서 부정행위로 결정한 경우
- 4항 참관인은 투표시간 동안 중선관위에서 발부한 명찰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31조 (기타사항)

- 1항 참관인들은 투표기간 중 투표소를 떠날 수 없으며 특정 후보측의 참관인 부재 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 후보측의 이의제기는 기각한다.
- 2항 참관인은 투표당일 08:30분까지 중앙선관위실에서 단대 선관위와 함께 투표함을 운반한다.
- 3항 투표소 내에서 참관인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해당 단대 선관위장의 입회하에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선거권자의 투표를 중지한다. 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앙선관위의 결정에 따른다.
- 4항 참관인은 시간 배정표를 작성, 투표 전날 17시까지 제출해야 한다.
- 5항 1인당 1시간 이상 참관인 착석을 원칙으로 한다.
- 6항 참관인이 결정하지 못할 때 선분장이 입회할 수 있다.

2 절 개표참관인

32조 (역할)

- 1항 각 후보의 선분장은 개표 시작 전까지 개표참관인 2인을 선정하여 중선관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 2항 개표참관인은 개표시작 30분 전까지 개표장에 도착하여야 한다.
- 3항 개표참관인은 개표상황을 참관, 득표의 검산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단, 개표참관인의 교체는 중선관위장의 허락하에

한다)

6 장 이의제기

33조 (이의제기권자)

- 1항 선거에 관한 이의제기는 각 후보의 선본장 만이 할 수 있다.
- 2항 선거운동원은 선본장을 통하여 이의제기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단, 선거운동원이 이를 위반하여 중선관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에게 징계를 할 수 있다. 선거 개표 당시는 선본장 - 선본장이 없을 경우에는 권한대행이 - 이 구두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24시간 이내에 이를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34조 (이의제기의 처리)

- 1항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중선관위 결정으로 이를 처리할 수 있다.
- 2항 이의제기 처리는 중선관위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7 장 징계

35조 (정의) 징계라 함은 규칙 각 조항에 어긋나는 행위와 기타 중선관위가 징계사유라고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해당 후보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36조 (징계의 종류)

- 1항 징계는 시정명령, 주의, 경고로 나누며 주의 2회는 경고 1회에 해당하고, 경고 3회시에는 후보자격을 박탈한다.

37조 (징계의 통보)

- 1항 시정명령과 주의는 해당 후보에게 구두로 통보하며, 경고는 통보와 함께 이를 공고한다.
- 2항 시정명령이나 주의를 받은 후에도 해당후보가 이를 2시간 이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해당 후보에게 주의 1회 또는 경고 1회를 준다.
- 3항 경고를 받은 선본은 경고 공고 게시 12시간 내에 공개사과문을 중앙대자보판과 선관위 홈페이지, 선본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38조 (징계의 의결) 징계의 의결은 중선관위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39조 (재심의)

- 1항 선본장은 경고나 주의 2회로 인하여 경고 1회에 해당하게 될 경우에 한하여 중선관위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2항 후보가 경고 3회로 인하여 후보자격이 박탈될 상황이 된 경우에는 중선관위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1차에 한하여 징계를 유보할 수 있다.

8 장 투표

40조 (투표방법) (신설)

총학생회 투표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한다. (단, 온라인 투표의 안정성이 보장된다고 판단될 경우 중앙선거위의 판단으로 온라인 투표도 진행할 수 있다.)

41조 (투표일과 투표시간)

1항 투표는 연장선거 기간을 포함하여 온라인/오프라인으로 5일 이내로 시행해야 한다.

단, 연장선거는 투표율이 50%를 넘지 않는 경우 중선거위의 판단에 따라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2항 오프라인 투표시간은 09:30분부터 18:30분으로 하고 중선거위의 판단에 따라 특정 투표구의 경우 투표를 연장할 수 있다.

3항 온라인 투표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단, 투표 마지막 날은 18:00분까지로 한다.)

42조 (투표구 및 투표소)

1항 투표구는 그 동안의 관례와 각 단대의 사정에 따라 중선거위의 의결로 결정한다.

2항 1개 투표구 당 1개 투표함을 원칙으로 한다.

3항 투표소에는 중선거위 또는 해당 단대 선거위 홍보물 이외의 유인물 부착을 불허한다.

4항 온라인 투표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한 포털사이트 투표구만 인정한다.

5항 온라인 투표의 경우 결과를 알 수 있는 관리자 비밀번호는 중앙선거위원장만이 알 수 있으며, 투표 마감 날에만 확인한다.

43조 (신분확인) 선거권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된 신분을 확인하여야 투표를 할 수 있다.

1항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자로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소유한 자

44조 (투표용지) 신설

1항 투표용지는 왼쪽에서부터 순서대로 표기한다.

2항 온라인 투표용지의 경우 “지지선본 없음”란을 표기한다.

45조 (투표절차)

1항 선거권자는 자신이 속한 투표구에서 투표하여야 한다.

2항 오프라인 투표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선거위의 신분확인

2 선거인 명부 확인

3 투표자의 날인 또는 서명

4 투표용지 배부

5 투표

3항 온라인 투표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 1 포털 사이트 로그인
- 2 총학생회 투표 프로그램으로 이동
- 3 본인 인증 절차
- 4 투표선택 화면 이동
- 5 투표

46조 (투표소에서의 질서)

- 1항 투표소에서는 투표행위 이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2항 선본장의 합의 하에 후보자의 투표소 내 인사 등의 행위는 규제 또는 실행할 수 있다.

47조 (투표함 이송)

- 1항 투표함은 투표당일 08시 30분에 중선거위원회와 각 선본장의 참관 아래 봉함에 자물쇠를 채운 상태에서 각 단대 투표구로 단대 선관위원과 참관인이 함께 이송한다.
- 2항 투표용지, 선거인 명부 및 제반 물품은 참관인의 입회하에 해당 단대 선관위에 이송한다.

48조 (투표 마감 후 이송)

- 1항 투표가 끝난 후 투표함을 봉하고 단대 선관위장과 참관인이 날인한 후 선관위원과 참관인이 함께 중선거위실로 이송한다.
- 2항 오프라인 투표함 이송 시 함께 구비해야 할 서류물품은 다음과 같다.
 - 1 기재한 선거인 명부
 - 2 남은 투표용지
 - 3 제반 기표용품
- 3항 온라인 투표함의 경우 투표 마감 시간 1시간 전에 팝업창을 통해 마감을 공지하고, 마감 이후에는 투표 프로그램을 폐쇄한다.

49조 (투표함 중선거위 도착 후)

- 1항 중선거위장은 투표함, 43조 이하의 서류, 물품 등을 인수한 후 즉시 이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 2항 각 투표소의 선관위원은 투표함의 이송 전후에 이상유무에 관한 참관인의 각서를 받는다.

50조 (투표함의 보관)

- 1항 각 투표구의 투표함의 해당 캠퍼스 중선거위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 2항 중선거위실이 투표함 보관에 부적당할 시 각 후보의 의견을 들어 학내 안전한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9 장 개표

51조 (통칙)

1항 개표는 중선거위원회만이 할 수 있다.

2항 표의 유효, 무효 및 특정 후보의 득표의 기준은 중선거위가 정한다.

52조 (개표시간) 개표시간은 투표마감 후 2시간 이후부터 실시한다.(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중선거위원장의 재량으로 이를 연기할 수 있다.

53조 (개표장)

1항 개표장은 학교 내의 공개된 장소로 중선거위가 정한다.

2항 개표장에서의 질서유지는 중선거위원장의 책임아래 수행한다.

3항 후보자는 개표시간 30분 전에 개표장에 도착하여야 하며, 개표 종료할 때까지 자리를 지켜야 한다.

54조 (개표소)

1항 개표소는 방청객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2항 개표소에는 중선거위 위원과 개표참관인만이 있을 수 있다.

3항 개표소에서의 연락은 중선거위원장만이 할 수 있다.

55조 (개표절차)

개표는 다음의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총 투표인 수의 공고

2 오프라인 투표함 개봉

3 오프라인 투표함 개표

4 개표 참관인의 재확인 및 득표의 검산

5 후보의 득표 묶음별로 분류하여 투표함에 재투입

6 현황판에 기재

7 온라인 투표 결과 확인

8 결과발표

56조 (효력)

1항 한 투표함에서 3% 이상의 오차가 발생할 때에는 해당 투표함에 대하여 무효처리 한다.

2항 전체적으로 3% 이상의 오차가 발생할 때에는 투표자체가 무효처리 된다.

3항 전체적으로 5% 이상의 오차가 발생할 때에는 선거자체가 무효처리 된다.

4항 온라인 투표의 경우 해킹, 자료 조작들의 흔적이 있는 경우 중선거위의 판단으로 전체 무효처리 한다.

10 장 당선

57조 (당선의 기준)

1항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2항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와의 득표차이는 전체투표의 오차를 초과하여야 한다.

58조 (당선공고)

- 1항 개표결과가 최종확인된 경우에는 중선거위원회 위원장은 이를 즉시 공고하고, 공고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의 이의신청을 받는다.
- 2항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 중선거위원회는 즉시 소집하여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단, 이의 의결은 중선거위원회 재적 대표자1/2 이상으로 한다)
- 3항 이의신청이 없을 때에는 당선확정공고를 한다.

11 장 재투표 및 재선거

59조 (재투표)

- 1항 표차가 오차보다 작을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 2항 오차가 3% 이상의 경우 재투표를 실시한다.
- 3항 재투표는 이틀에 걸쳐 진행하고, 투표율에 상관없이 다득표자가 당선한다.
- 4항 재투표는 일주일 안에 실시하며 선거운동은 하지 않는다.

60조 (재선거)

- 1항 연장투표 후에도 전체투표율이 50% 이상이 안 될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
- 2항 오차가 5% 이상인 경우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 3항 재선거의 시기에 대해서는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에서 정한다.

12 장 공동선거평가단

61조 (구성)

선거관리위원장과 각 선본장을 반드시 포함하며, 선관위원장이 책임지고 주재한다

62조 (일정)

선거일정 종료 3일 내에 선관위원장이 첫모임을 소집한다.

63조 (평가내용)

공동선거평가단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평가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1. 선거 전반에 대한 실무적인 평가
2. 선거 기간 중 선본 징계에 대한 기록과 판단근거
3. 낙선 선본의 정책 집행 가능 여부

64조 (공개의 원칙)

공동선거평가단의 회의는 총학생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며 불참한 선본의 이름을 반드시 게재하도록 한다.

13 장 부칙

65조 (효력) 본 세칙은 개정된 날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회칙에 대한 이의제기는 1주일로 한다. (단, 경과조치 기간 중 규칙 수정의 요구가 있을 때는 즉시 중운위의 논의를 거쳐 전학대회를 소집하여 수정인준 절차를 밟는다. 만약 전학대회가 소집되지 않았을 경우는 인준을 중운위에 위임하도록 한다.)

재정시행세칙

1 장 총칙

1조 (목적) 본 회칙은 총학생회 재정에 관한 운영 원칙을 밝혀 예산운영의 혼란을 줄이고, 일관적인 예산집행을 하기 위함이다.

2조 (회기) 본회 재정의 회기는 1학기 단위로 하며, 회기별로 전학대회의 인준을 받아 공개한다.

3조 (권한) 본회 재정운영의 전반적인 책임과 권한은 총학생회 사무국장에게 있고, 각 항목별 집행은 해당책임자에게 있다.

4조 (재정운영의 원칙) 본회는 재정운영에 있어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단,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이익은 회원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5조 (예결산 공개 의무)

1항 학생회비가 지출된 모든 단위는 예/결산을 공개하여야 하며, 예/결산 안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예/결산 안에 큰 결함이 있을 경우 예산 지급을 보류한다.

(보류 이후 한 달 안에 예/결산 안을 제출하지 않거나, 심하게 결함이 있을 경우 동일 회기 학생회의 경우 예산의 50%를 삭감하여 차기 학생회로 이월하고, 지난 회기 학생회의 경우는 전임,신임 학생회장의 공동명의 사과 대자보와 경위서를 부착한 후 예산을 지급한다.)

2항 학생회비가 지출되지 않더라도 전학대회 산하 기구 또는 학생사회에서 공식적인 위상을 가진 단체의 예결산은 공개해야 한다.

3항 예결산내역은 학생회비에 국한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수입과 지출내역은 전학대회의 결정에 따른다.

2 장 예산

6조 (총수입)

1항 총수입은 총학생회비와 교비지원금, 기타 행사별 후원 예상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2항 총학생회비는 지난년도 같은 회기의 등록생수를 기준으로 책정하며, 이후 변동사항은 결산안에 반영한다.

3항 교비지원금은 지난년도 같은 회기의 교비지원금을 기준으로 책정하며, 이후 변동사항은 결산안에 반영한다.

4항 기타 행사별 후원예상액은 행사별로 광고수익예산과 기부금은 합한 것을 말하며, 기금은 특성상 해당 항목 내에서의 지출을 원칙으로 한다.

7조 (총지출)

1항 총지출은 총수입내에서 지출된 금액을 말한다.

2항 이월금은 총지출에서 총수입을 제한 금액을 말한다.

8조 (예산 편성의 원칙)

- 1항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위하여 각급 자치단위들의 예결산은 분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 2항 전년도(직전 회계연도) 활동 내역과 결산, 당해연도 활동계획과 예산을 종합 심의하여 해당회계년도 예산을 편성한다.
- 3항 예산편성은 2항에 적시된 자료에 근거하여 각급 단위의 활동이 재정문제로 인하여 활력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을 지향하여 편성한다.
- 4항 전년도(직전 회계연도) 활동 내역과 결산, 당해연도(당해 회계연도) 활동 계획서와 예산안을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또는 예산논의에 불참하는 경우 자기 단위 예산에 대한 심의, 조정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에 상당하는 처분을 한다.
- 5항 심의결과 합리적인 재정관리와 내핍을 통해서도 부족한 재정을 충당할 수 없어 활동의 활력을 잃었거나 혹은 활력이 떨어져 가고 있다고 판단되는 곳을 예산 책정에 있어 우선으로 고려한다. 다음으로 학생회비에 주된 수입을 의존하고 있는 단위를 고려한다.

9조 (예산안 작성)

- 1항 예산안은 대항목, 중항목, 소항목으로 나뉜다.
 - 1 대항목은 단과대학생회 예산, 총학생회 예산, 자치예산, 기타예산으로 나뉘며, 전체 예산에서 매 회기 일정한 비율을 할애한다. 단, 대항목은 예산 안에 따라 추가되거나 수정될 수 있다.
 - 2 중항목은 일정한 기간동안 단일한 사업명으로 묶어낼 수 있는 범위의 예산을 말한다. 단, 중항목은 경우에 따라 세분화할 수 있다.
 - 3 소항목은 영수처리가 가능한 지출단위를 말한다.
- 2항 각 항목별로 전년도 예산대비 증감비율을 표시해야한다.

10조 (예산배정)

예산배정은 원칙적으로 항목별로 최소고정지급예산(이하 기본예산)에 결정된 추가필요예산(이하 추가예산)을 합하는 것으로 한다. 단, 최소고정지급예산은 전학대회에서 수정할 수 있다.

11조 (예산조정)

- 1항 총학생회 사무국은 원활한 예산조정을 위해 한 달에 한 번 사무국 연석회의를 소집한다.
- 2항 사무국연석회의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1. 단과대 예/결산안 작성
 2. 단과대 예산 조정
 3. 사업별 재정분담 등
- 3항 총학생회는 예산안 작성 전에 각 단체와 예산 조정을 위한 모임을 진행하여야 한다.
- 4항 사무국연석회의에 불참에 따른 피해는 단과대에서 감수한다.

3 장 결산

12조 (결산보고) 결산안은 매 학기 정기 전학대회에서 전학기 예산안을 바탕으로 보고한다.

13조 (결산안 형식) 결산은 첨부되어 있는 형식을 따라야 한다. 그와 관련된 증빙자료들을 함께 첨부해야 한다.

4 장 총학생회 예산

14조 (정의) 총학생회 예산은 총학생회의 운영과 판단에 따라 사업에 쓰이는 금액을 말하며, 재정운영의 책임은 총학생회에 있다.

15조 (예산배정) 총학생회 예산은 총학생회비의 45%를 배정하며, 사업별예산(집행국예산), 운영예산, 기타예산으로 나뉘어진다.

16조(사업별예산) 사업별 예산은 매해 반복되어 실행되는 사업을 가리킨다. 정기사업에는 새내기새로배움터, 전학대회, 4.18 대장정, 5월 대동제, 농활, 가을축제(고연전) 등이 있다.

17조(집행국예산)

- 1항 총학생회 집행국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별도의 활동 통해 특정한 시기 또는 장기적으로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사업에 배정된 예산을 말한다.
- 2항 학내 체육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체육국에 체육 단체 지원금으로 500만원을 책정한다. 체육 단체 지원금은 운동단체 협의회(역도부, 태권도부, 유도부, 펜싱부, 미식축구부, 검도부, 씨름부, 사격부) 및 학내 운동단체들의 행사 지원금으로 사용된다.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예산자치협의회 지원 규칙을 준수한다.

18조 (운영예산)

- 1항 총학생회 운영예산은 비품구입, 총학생회장단 또는 집행국의 활동비, 회의준비, 총학생회실 운영 등에 쓰이는 비용을 말한다.
- 2항 운영예산은 지속적인 절감을 통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19조 (기타예산)

- 1항 기타예산은 총학생회가 직·간접으로 후원하는 행사나 단체에 쓰여지는 금액이나 예산항목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은 예산을 말한다.
- 2항 기타예산은 총학생회 예산의 10%를 넘지 않도록 한다.

20조 (이월금) 차기 학생회 이월금은 매해 2학기 총학생회 예산의 5%이상을 책정하여 총학생회 운영예산으로 관리한다.

21조(선거공영제) 선거 공영제를 위한 선거 공영 기금을 매해 2학기 총학생회 예산의 5%이상을 책정하여 총학생회 운영예산으로 관리한다.

5 장 단과대학생회 예산

22조 (정의) 단과대 학생회 예산은 단과대학생회와 동아리 연합회, 애기능 동아리연합회의 운영과 판단에 따라 사업에 쓰이

는 기금을 말하며, 재정운영의 책임은 해당 단과대학생회와 동아리 연합회, 애기능 동아리연합회에 있다.

23조 (예산배정)

- 1항 단과대학생회 예산은 총학생회비의 35%를 배정하며, 2항과 3항에 규정된 절차를 따른다.
- 2항 단과대 학생회 예산의 20%를 동아리예산으로 배정하며, 동아리연합회와 애기능동아리연합회에 각각 동아리예산의 75%, 25%를 배정한다. 단, 천원이하는 반올림한다.
- 3항 단과대 학생회 예산의 80%를 동아리 연합회와 애기능 동아리연합회를 제외한 나머지 단과대예산으로 배정한다.
 - 1 각 단과대에 기본예산으로 120만원을 배정한다. 단, 전체인원 500인 이하의 단과대의 경우 기본예산을 100만원으로, 200인 이하의 단과대의 경우 기본예산을 80만원으로 책정한다.
 - 2 기본예산을 배정한 후 남은 예산은 각 단과대별 인원비율로 추가예산을 배정한다. 인원비율은 금년도 등록자수를 기준으로 한다. 단, 천원이하는 반올림한다.
 - 3 필요한 경우 인원별로 배정되는 추가예산외에 보정치를 두어 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
- 4항 신생 단과대의 경우, 단과대간의 협의를 거쳐 예산을 책정한다

6 장 특별기구 예산

24조 (정의) 특별기구 예산은 회칙 상 규정된 총학생회 특별기구에 등록금 기구들에게 배정되는 예산을 말하며, 재정운영의 책임은 해당 특별기구에 있다.

25조 (예산배정)

- 1항 특별기구 예산은 총학생회비의 10%를 배정하며, 다음과 같은 기준을 가진다.
 - 1 기본예산으로 각 특별기구에 800,000원을 배정한다.
 - 2 추가예산은 전체 특별기구 예산에서 기본예산을 배정한 후 남은 예산에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배정한다.(단, 하나의 단체가 전체 특별기구 예산의 25%를 초과하여 배정받을 수 없다.)

7 장 자치예산

26조 (정의) 자치예산은 총학생회와 특별기구 및 단과대, 학부 또는 과반학생회를 제외한 자치단체에서 쓰이는 예산을 말하며, 재정운영의 책임은 예산자치협의회에 있다.

27조 (예산배정) 자치예산은 총학생회비의 10%를 배정하며, 예산배정은 구체적 절차와 방법은 별도의 시행세칙을 두어 관리한다.

8 장 교지대

28조 (정의) 교지대는 교지의 편집과 발행을 위해 그 권한을 위임받은 교지편집위원회가 관리, 운영하는 기금을 말하며, 책임은 각 교지편집위원회에 있다.

29조 (예산배정) 교지대는 학생회비와 별도로 관리되며, 교지편집위원회(현, 고대문화와 석순)의 협의에 따라 각 교지편집위에 배정하도록 한다.

30조 (자치언론기금)

1항 교지대의 5%를 자치언론기금으로 전환하여, 학내에 건전한 자치언론의 활성화를 위해 사용하도록 한다.

2항 자치언론기금의 관리는 각 교지편집위원회에서 1인, 총학생회 1인, 중앙운영위 1인이 참여하는 자치언론기금 관리위원회에서 총괄한다.

9 장 학생회비 인상

31조 (인상율) 학생회비는 인상된 이후 3년마다 5%씩 인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단, 3년간의 물가인상률과 등록금 인상을 등을 고려해 인상율을 재조정할 수 있다.

32조 (인상절차)

1항 학생회비 인상을 하기 위해서는 전학대회에 상정되어 재적대의원의 2/3이상의 참여해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항 해당 회기에 부결된 인상안의 경우 재조정을 거쳐 다음 년도에 재심의 할 수 있다.

33조 (이의제기) 전학대회 대의원 1/3이상 또는 회원 1/30 이상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인상안을 재조정하여 재심의 하여야 한다.

34조 (교지대 인상) 교지대는 학생회비 인상과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여 인상하도록 한다.

35조 (적용) 가결된 인상안은 다음년도 1학기부터 적용된다.

10 장 부칙

36조 (학생회비 인상시기) 학생회비 인상은 2005년 전학대회에서 인상안을 논의하며, 이후 회칙에 따라 3년마다 5%의 인상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37조 (기존의 지급관행 폐지) 재정운영세칙이 발휘되는 2005년 1학기를 기준으로 기존의 총학생회 지급관행을 폐지하며, 2005년 2학기 회기까지 1년간 기존의 지급예산의 보장이 필요한 경우 총학생회는 일정부분을 담당하도록 한다.

38조 (효력) 본 세칙은 개정된 날부터 일 주일의 경과조치 기간을 두고 효력을 발휘한다.